

청주지방법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553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연하

변 론 종 결 2023. 4. 11.

판 결 선 고 2023. 5. 3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7. 1. C에게 165,000,000원을 변제기 2020. 6. 30., 이자 연 5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원고는 C로부터 70,000,000원을 변제받았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피고가 그 자금으로 D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E 공장용지 2,456㎡, F 공장용지 418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였으므로, 그 자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이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95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

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원상회복만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도 함께 소구하여야 한다. 그런데 원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지급을 구할 뿐, 그 증여행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하지는 않고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이승훈